1. 개정이유

가. 재검토기한(일몰제) 설정

1)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소관 지침(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등 5개)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아래 규정에 '재검토기한' 조문을 신설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

조 번호	행정규칙 명	개정 내용
제1조	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	'재검토기한' 조문 신설
제2조	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	
제3조	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	
제4조	시험연구비 집행지침	
제5조	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: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립문화유산연구원지침 제 호

‘재검토기한’ 조문 신설에 따른
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지침 5개 일괄개정안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등 5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1조(「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」의 개정)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재검토기한)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2조(「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」의 개정)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재검토기한)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3조(「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재검토기한)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4조(「시험연구비 집행지침」의 개정)

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다음 조문을 지침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신설한다.

□재검토기한: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5조(「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」의 개정)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재검토기한)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 칙 <제 호, 2025. 2. 14.>

이 지침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정보관 운영규정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1조(재검토기한)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(재검토기한)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조(재검토기한)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시험연구비 집행지침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재검토기한: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(재검토기한)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